

[참고자료 1] 출판계약 형태와 판면권

- <판면권 관련 출판계약 실태조사> 설문지 7~10번, 12번 문항 관련

1. 출판계약의 주요 형태

구분	대상	내용
①단순출판이용(허락)계약	종이책	-저작권자가 (여러) 출판사에게 종이책을 출판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. -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사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고 해도 대항할 수 없음.
②독점적출판이용(허락)계약	종이책	-저작권자가 특정 출판사에게만 종이책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. -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만 할 수 있을 뿐, 제3의 출판사에 대하여 직접 항의하거나 출판물 배포의 금지,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.
③공중송신(전송)이용허락계약	전자책	-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전자책을 발행할 수 있는 공중송신이용허락 또는 전송이용허락을 하는 계약. -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 형태.
④출판권설정계약	종이책	-저작권자가 특정 출판사에게 종이책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. -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, 출판사가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.
⑤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	전자책	-저작권자가 특정 출판사에게 전자책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계약. -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, 출판사가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.
⑥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	종이책 및 전자책	-종이책에 대한 출판권 설정과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동시에 하는 계약.
⑦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사용 계약(종이책+전자책+부차적사용)	종이책 및 전자책, 부차적 사용	-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종이책에 대한 출판권 설정과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동시에 하면서, 번역, 영화화, 오디오 북 발행, 저작물의 부분 이용 등에 대한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탁하고,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차적인 수익 중 일부를 출판사에게도 배분할 수 있게 한 계약.
⑧복제·배포권 양도계약	종이책	-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중 복제·배포권만을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계약
⑨저작재산권 양도계약 (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)	종이책 또는 전자책	-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지만,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하지 않는 계약. -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자이므로 무단으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직접 금지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.
⑩저작재산권 양도계약 (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)	종이책 또는 전자책	-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,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양도하는 계약.

2. 판면권(제도)의 개요

-저작권법 개정안(2017.1.11.) 내용을 중심으로

판면권 제도란 ‘출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판물의 판면을 만든 출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’를 말한다. 여기서 ‘판면’이란 ‘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의 스타일, 구성, 레이아웃이나 일반적인 외관’을 말한다. ‘판면권’은 ‘출판자가 자신이 발행한 출판물의 판면을 복제·배포·전송할 권리’라고 정의할 수 있다.

<표> 판면권 제도의 개요

구분	내용
누가 판면권을 가지는가? (주체)	- 출판물을 발행한 출판자, 즉 출판사가 판면권을 가진다. - 출판사 내부에서 판면을 제작한 편집자나 디자이너, 또는 외주 용역을 맡아 교열교정이나 디자인을 한 외부 협력자는 판면권을 가질 수 없다.
판면권으로 무엇을 보호하는가? (대상)	- 판면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,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(쪽, page)의 스타일, 구성, 레이아웃이나 일반적인 외관을 보호한다. - 저작물은 저작권(즉,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)으로 보호된다.
판면권은 언제 발생하고, 언제 끝나는가? (보호기간)	- 판면권은 출판물을 발행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5년간 존속한다. -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에 초판이 발행되었을 경우, 판면권은 2017년 5월 1일부터 발생하며 다음해(2018.1.1.)부터 25년이 되는 204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판면권을 도입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? (구체적 변화)	① 출판권 설정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에 종이책을 불법복제하는 것은 출판권 침해도 되고 판면권 침해도 된다. ② 설정 출판권 존속기간 만료 시에는 기존 출판자(A)의 판면권과 새로운 출판권자(B)의 출판권 및 판면권을 각각 별도로 인정하게 된다. ③ 김소월의 시집 《진달래꽃》처럼 저작권 보호기간(저작자 사후 70년)이 만료된 저작물을 새로운 판면으로 제작한 출판물도 판면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④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독특한 판면 디자인으로 출판물을 발행한 출판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. ⑤ 출판권설정이 아니라 출판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물을 발행할 때에도 판면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 ⑥ 판면권의 목적이 되는 판면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와 제31조 전부를 준용하므로, 출판자는 저작권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출판 관련 4대 보상금(교과용도서보상금,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, 수업지원목적보상금, 도서관보상금)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.